

보건분야 의사공무원 임용 및 업무

김문식(국립보건원 질병관리부장)

I. 공무원 제도의 개요 및 분류

공무원은 그 소속에 따라 크게 국가공무원(중앙행정기관에 소속)과 지방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으로 구분하되 그 임용절차, 분류 등은 거의 동일하다. 단지 중요한 차이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임용 및 업무분야에 있어서 구분이 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서 다시 경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이중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무원으로써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며 의사의 신분을 가진 경우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보건의무 직군에 보건직렬이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업무에 임면이 가능하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직군”이라고 하며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군의 예를 보면 보건의무 외에도 공안,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환경, 교통, 시설, 정보통신이 있으며 직렬에서 보건의무 직군의 직렬을 보면 보건이나 의무(일반의무 및 치무로 구분)외에도 식품위생, 약무, 간호 직렬이 있다.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법관·검사·외교관·경찰·소방관·교사나 교수·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며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밖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차관, 처 및 청장, 국무조정실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차장 등, 헌법재판소재판관,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별정직공무원(국회수석전문위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비서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이 있다.

< 국가공무원법 >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12.31, 86.12.31, 88.8.5, 90.12.27, 91.5.31, 91.11.30, 94.7.20, 94.12.22, 96.8.8, 97.12.13 법5452, 98.2.24, 98.2.28, 99.1.21, 99.2.5, 99.5.24>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라.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마.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국회수석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사·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2.12.28, 94.12.22, 98.2.24> [전문개정 81.4.20]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63.12.16, 81.4.20, 99.5.24>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II. 공무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관련 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권리, 의무와 권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항상 염두에 두고 명심하여야 할 내용들이다.

< 권리 >

1) 신분상의 권리

공무원의 신분보호권은 곧 신분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과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명에 의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권리이다.

2) 재산상의 권리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보수체계상 일반직 공무원과 국립보건원 등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의 보수표를 붙임과 같이 참고로 소개하고자 한다.

3) 노동법상의 권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를 위한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에서 볼수 있는 노동법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된다. 다만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나 이 경우도 6급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5급 사무관 이상으로 채용되는 의사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해당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의무 >

1)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법치주의하의 행정은 법령에 의거하고 집행되는 것이므로 행정사무의 집행자인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위법으로 행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징계책임과 형사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실의 의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하는 의무이다. 즉 직무명령이 없을 때 자기의 직무범위 내에서 자기의 의견을 활용, 헌신적인 책임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으로 고려하는 자발적 능동적인 직무태도를 말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없이 공무원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에는 행정체계는 그 질서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3) 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광의의 성실의무에 해당되며 능률적인 행정의 연속성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에 역시 같은 내용의 직장이탈금지 조항이 있어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안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보건업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4)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그러므로 친절과 공정한 태도로써 국민에게 대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즉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잠시나마 소홀히하지 않는 의무를 말한다. 공정의 의무라 함은 개인적 사정으로 국민 각자의 생활이익의 순위를 무시하지 않는 의무를 말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의무이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어떤 사실이 비밀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상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다. 어느 것이든 재직 중인 것은 물론 퇴직 후라도 존재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이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법은 물론 형벌로써 처벌된다. 법원이나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도 직무상의 비밀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때 허가받은 사항만 진술할 수 있다.

6)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범위안에서 국가인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소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위신을 손상할 염려가 있는 행위는 결국 국가의 불건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품위를 오손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청렴의 의무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7) 영리업무, 겸직 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직무만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공무원이 상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리추구가 현저한 업무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지배인 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것,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업무능률 저해, 공무에의 부당 영향, 국가이익 침해, 정부의 불명예 초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일당일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헌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구체적으로는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명운동을 주재·권유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예외이다.

9)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이러한 금지의무는 이미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의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에서 명시하고 있다.

< 공무원의 책임 >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법상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의무위반의 경우에 발생하는 공법상의 책임문제와 의무위반의 행위가 동시에 형사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범익을 침해하는 경우 또한 위반 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상의 책임인 징계상의 책임, 재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1) 징계상 책임

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소속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관계라는 특별권력관계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원인은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이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공무원법 제33조 1항 7호). 직위해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아무 절차 없이 당연 퇴직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공무원법 제80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혼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의 수단으로 청원과 행정소송이 있다.

2) 형사상 책임

공무원의 의무위반의 행위가 동시에 형법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형사상의 범죄가 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수뢰업등이 해당되며, 관련법으로는 형법상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이 있다.

3) 재산상의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의 소속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행한 배상의 범위와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붙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직무등급 번호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1,572,700	1,404,300	1,255,500	1,094,300	959,700	783,400	695,400	617,600	541,600
2	1,634,200	1,462,800	1,308,200	1,143,900	1,003,100	824,400	731,600	651,900	573,700
3	1,697,600	1,522,100	1,362,500	1,194,400	1,048,200	866,700	769,700	688,100	607,900
4	1,762,400	1,582,500	1,417,300	1,246,300	1,095,200	910,400	810,100	724,800	643,900
5	1,828,800	1,643,500	1,473,100	1,298,900	1,143,500	955,300	851,900	763,600	680,600
6	1,896,400	1,705,000	1,529,700	1,352,100	1,192,900	1,001,300	894,900	803,000	718,100
7	1,965,000	1,767,200	1,587,000	1,406,000	1,243,200	1,047,600	938,300	843,100	754,200
8	2,034,500	1,829,700	1,644,600	1,460,500	1,294,400	1,094,300	982,100	881,400	789,000
9	2,105,000	1,892,500	1,702,800	1,515,000	1,345,600	1,141,200	1,023,800	918,200	822,600
10	2,175,900	1,955,800	1,761,200	1,569,800	1,397,300	1,185,500	1,063,800	953,300	854,900
11	2,247,100	2,019,300	1,819,900	1,625,000	1,445,900	1,227,800	1,101,700	987,100	885,900
12	2,318,600	2,083,100	1,878,800	1,675,600	1,491,600	1,268,000	1,138,000	1,019,400	915,900
13	2,390,400	2,147,300	1,933,600	1,723,100	1,534,900	1,306,000	1,172,500	1,050,400	944,600
14	2,462,300	2,205,400	1,984,600	1,767,500	1,575,400	1,342,000	1,205,500	1,080,200	972,600
15	2,525,400	2,259,300	2,031,700	1,809,400	1,613,700	1,376,400	1,237,000	1,108,900	999,300
16	2,581,700	2,308,800	2,075,800	1,848,800	1,649,900	1,409,000	1,267,000	1,136,400	1,025,400
17	2,631,800	2,354,400	2,116,900	1,885,500	1,683,900	1,440,000	1,295,600	1,162,400	1,050,600
18	2,676,600	2,396,300	2,155,100	1,920,000	1,716,200	1,469,400	1,323,200	1,187,500	1,074,500
19	2,716,800	2,435,000	2,190,700	1,952,300	1,746,500	1,497,300	1,349,100	1,211,600	1,097,700
20	2,753,200	2,470,500	2,223,800	1,982,600	1,775,000	1,523,800	1,373,900	1,234,600	1,120,000
21	2,786,600	2,503,100	2,254,700	2,011,000	1,801,900	1,549,000	1,397,600	1,256,700	1,141,000
22	2,816,900	2,533,100	2,283,400	2,037,600	1,827,400	1,572,800	1,420,100	1,277,900	1,161,300
23		2,560,800	2,310,000	2,062,700	1,851,400	1,595,400	1,441,700	1,298,200	1,180,700
24		2,585,900	2,334,900	2,086,300	1,873,800	1,617,000	1,462,400	1,317,700	1,199,200
25			2,358,200	2,108,100	1,895,000	1,637,500	1,482,000	1,336,300	1,216,900
26			2,379,800	2,128,700	1,915,200	1,656,900	1,500,800	1,354,300	1,233,100
27				2,147,900	1,934,100	1,675,300	1,518,900	1,371,400	1,248,600
28				2,166,100	1,952,100	1,692,800	1,535,700	1,387,900	1,263,900
29					1,968,800	1,709,100	1,551,900	1,403,600	1,278,600
30					1,984,900	1,725,100	1,567,500	1,418,700	1,292,900
31						1,740,200	1,582,400	1,433,300	1,306,900
32						1,754,500			

[붙임] 연구직공무원의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959,700	695,400
2	1,011,900	744,900
3	1,064,200	794,500
4	1,116,400	844,200
5	1,168,600	893,900
6	1,243,700	942,700
7	1,318,600	991,500
8	1,393,400	1,040,200
9	1,468,000	1,088,600
10	1,542,800	1,137,300
11	1,609,300	1,174,100
12	1,675,900	1,211,000
13	1,741,700	1,247,600
14	1,808,100	1,284,000
15	1,873,700	1,320,100
16	1,937,600	1,349,300
17	2,001,100	1,378,200
18	2,064,900	1,407,300
19	2,128,500	1,436,300
20	2,192,100	1,465,300
21	2,245,400	1,493,300
22	2,298,300	1,521,600
23	2,351,500	1,549,800
24	2,404,500	1,577,900
25	2,457,500	1,605,900
26	2,502,300	1,626,000
27	2,547,400	1,646,100
28	2,592,100	1,666,200
29	2,636,900	1,686,100
30	2,681,700	1,706,100
31	2,721,600	1,726,100
32	2,761,700	1,746,200
33		1,766,200
34		1,786,300
35		1,806,100
36		1,824,600

Ⅲ. 의사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앞서 공무원 제도의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경력직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보건의무 직군에서 보건이나 또는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자리가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법으로 허용된 직위나 직급이다. 대개 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러한 자리에 임용되지만 특별채용의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방형 직위에 의해서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보건소장의 경우처럼 의사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재 업무, 위치 및 부내 조직 중에서 보건직렬이 임명되거나 보임될 수 있는 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라고 규정하면서 총 18개 부가 열거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중 13번째 자리에 있다.

< 정부조직법 >

제26조 (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01.1.29>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보건복지부의 관장업무는 동법 제39조에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39조 (보건복지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개정 99.5.24>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의 조직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국단위 이상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결핵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국립검역소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본부의 각 과단위 업무 범위 및 관장사무, 임명이 가능한 직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규정된 기관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포결핵병원 등 3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분류되어 외부 인사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로도 보할 수 있는 자리는 국립보건원장, 보건증진국장,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등 3개 보직이 있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국립보건원·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결핵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둔다. <개정 98.12.31, 99.12.28, 2000.12.30>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국립검역소를 둔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및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둔다. <신설 99.12.28, 2000.12.30>

현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중에서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나 기타 특수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무직 자리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며 단, 보건직이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의사공무원도 임명이 당연히 가능하므로 이러한 자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보건직 공무원 임명이 가능한 자리 >

[보건복지부 본부]

- 한방정책관(한방제도담당관, 한의약담당관)
- 보건정책국장(보건산업정책과장, 의료정책과장, 보건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과학단지과장)
- 보건증진국장(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암관리과장, 정신보건과장, 구강보건과장)
- 연금보험국장(보험급여과장)
- 노인보건과장, 아동보건복지부과장, 여성보건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 국립보건원 원장, 전염병관리부장, 기획연구과장, 방역과장, 전염병정보관리과장, 기타 연구관으로써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세균부, 바이러스부, 생명의학부, 유전체연구소 등에서 근무가 가능함
-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기획팀장, 장기이식수급조정팀장
- 국립검역소 소장 및 검역관

그런데 특히 검역소장의 경우에는 검역법에서 검역소장이나 검역관 중에서 1명은 반드시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검역법 >

제30조 (검역관의 임용자격)

- ① 이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 <개정 69.5.19>
- ②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써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중 적어도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76.12.31>
- ③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9.5.19>

[기타 부처]

기타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보건직으로 임명이 가능한 자리가 관련 부처의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부와 환경부가 그러하며 특히 환경부의 경우에는 모든 국장이나 관 자리에 보건직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노동부 : 산업안전국장 및 안전정책과장, 산업안전과장, 산업보건환경과장
- 환경부 : 관 및 각 국장에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 부임 가능 (공보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환경정책국장, 자연보전국장, 대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상하수도국장, 폐기물자원국장)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의사공무원들이 임명될 수 있는데 시·도별로 보건위생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약과장, 보건과장, 보건위생과장 등의 자리에 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시·군·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역보건법 >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등)

- ①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간에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임용자격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평가,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

제11조 (보건소장)

-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

휘·감독하며 관할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IV. 의사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현황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며 특별채용의 경우도 있는데 의사 공무원의 경우 가장 최근 사례인 국립보건원장의 임용공고와 보건사무관 임용공고를 참고로 하면 다음의 사례1 및 사례2와 같다.

< 사례 1. 국립보건원장 임용 공고 >

1. 임용직위 : 국립보건원장

○ 보직가능직급 : 관리관, 보건연구관 또는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급성전염병 감시, 치료,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수립
- 전염병·원인규명과 전파양상 파악관리
-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응용기술 개발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2.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 임용기간 만료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임용 가능

3. 신분

-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요건은 하나만 구비하면 됨.

< 필수요건 >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 연구경력 16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 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
- ※ 전공분야 : 보건학, 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 유전공학분야 또는 업

무관련 분야

< 경력기준 또는 실적요건 >

○ 경력기준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의 보건연구원 경력 5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이사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정교수 경력 6년이상인 자

○ 실적요건

- 보건.의료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업무, 보건복지 및 방역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 의사면허 소지자, 영어 능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 등은 가점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 사례 2. 보건사무관 임용 공고 >

1. 채용직급 및 인원

- 직급 : 보건사무관(5급)
- 인원 : 2명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아래기준 1에 부합하는 자

1. 의사면허 취득 후 2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2. 보건관련학과(의학, 보건행정, 보건정책, 보건경제, 역학, 지역사회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통계, 질병관리) 박사학위 소지자

※ 채용 상한연령 : 만 40세이하(60. 1. 1 이후 출생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후 선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1.11.19 ~ 11.24(6일간)

※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총무과(정부과천청사 2동 420호)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10,000원 부착)

현재 위와 같은 개방형직위 또는 경쟁채용 등의 형태나 아니면 특별채용의 형태를 거쳐서 임명되어 2002. 1. 2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공무원들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본부의 경우에는 보건증진국장(개방형직위), 보험급여과 보건사무관(중전 의무직 사무관으로써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수급조정팀장 대리로 근무하다가 보건직 사무관으로 전직하여 특채형식으로 임명) 2명이다. 그러나 최근 앞서 사례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사무관 임용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1명이 합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타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으로써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보건서기관(전임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장)인 의사1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에는 국립보건원의 경우, 현재 공석이긴 하지만 원장(관리관 1급, 개방형직위)에 의사 자격자가 근무하였고 후임으로도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 전염병관리부장(보건이사관), 방역과장(보건부이사관), 역학조사과장(연구관), 전염병정보관리과장(보건서기관), 생명의학부 유전질환과장(연구관) 직위에 의사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방역과, 역학조사과, 전염병정보관리과, 보건복지연수부, 바이러스부 소화기바이러스과, 유전질환과, 대사영양질환과에 연구관으로써 의사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에서 마산결핵병원장의 경우에는 현재 보건부이사관이며 전임 보건복지부 본부 질병관리과장을 역임한 의사자격자가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보건과장을 의사자격자가 근무하고 있고 기타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임자는 아니지만 전임자의 경우에는 의사자격자가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강원도 방역담당 사무관이 현재 의사자격자가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전국 242개 보건소 가운데 의사 자격자가 소장인 곳은 122개소로 파악되어 있다.

V.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으로써의 역할

의사 자격자들이 임용되어 근무하는 직위나 업무는 대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국가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를 본다면 주로 건강증진, 전염병 관리, 미생물 분야나 생명의학 분야의 연구분야 등에 현재 종사하고 있다. 그 외에 종전에도 담당하던 업무까지 알아본다면 보험급여정책, 각종 만성질환관리, 지역보건정책 등의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여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의사의 기본적 지식과 소양은 물론 기타 수련과정에서 예방 의학을 전공한 경우, 더욱 세분하여 의료관리나 보험정책, 역학 등을 전공한 경우에는 그 전공분야와 관련한 업무에서는 물론이고 기타 분야에서도 정책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되도록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집행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이익단체와의 연계를 논하면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마치 국방부에는 군인 신분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과학기술부에도 과학을 전공한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편협된 논리에 불과하다. 물론 의사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문서의 기안이나 업무의 흐름, 예산의 수립, 법안 진행 등의 경우에 업무진행에 무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써 중요한 업무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지식이 가장 중요하며 기타 입법이나 예산, 일반 행정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업무 분석이나 기타 다른 보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지원에 의해서 쉽게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 정책의 수립은 공무원 이외에도 입법기관이나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제안되고 있고 특히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향후 새로운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행정일반적 판단과 어느 정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중요하다. 동시에 전문가적 식견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지와 중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밀하게 시행하고 향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대비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다른 전문직이나 학교 교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물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로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일정한 자격이나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의사자격자로서 보건복지부 본부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와 분야로 해외 훈련을 하였으며 국장급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훈련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해외파견 기회를 통해서 국제기구에서도 일부 업무를 해볼 수도 있다.

의사 공무원들이 업무나 보직 등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실제적인 진료와 관련된 고민은 외적인 비교요인으로써 대학이나 연구하는 의사들과 비교해서는 직업적 안정성, 개업한 임상 의사들과 비교해서는 경제적 수준의 비교 때문에 공직 생활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일단 시작하였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적 안정성의 경우에 학교 교수와 곧잘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계속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교수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비가 대부분 공공분야 특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

안하여 교수직과 장래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일반 공무원들도 현재의 경제적 보상으로 모두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고 근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의사자격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외국 등에 비해서 폭넓지 못한 상황이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도전해서 스스로를 계속 연마하면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직까지는 사회 현장의 주인공은 역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